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The APO in the News”

Name of publication: Zone CJ (08 December 2014, Republic of Korea)

Page: <http://sem.zonecj.com/board/contentsView.php?idx=983602>

[경제] 아시아경쟁국 근로시간 · 임금 · 생산성 비교

14.12.08 09:16:30

기업을 보면 경제가 보인다.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노동생산력이 가장 낮으면서 실질 임금수준은 가장 높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발표한 ‘아시아 경쟁국의 근로시간 · 임금 · 생산성비교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우리보다 1 인당 GDP 가 훨씬 높지만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했으며 일본은 더 짧았다.

이번 보고서는 서구 선진국이 아닌 유사한 경제발전 경험을 가진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복수의 국제자료를 통해 아시아 경쟁국을 비교했고, 항목별로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 경쟁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국제데이타(Penn World Table)를 보면, 2011 년 기준 홍콩(2,344 시간), 싱가포르(2,287 시간), 한국(2,193 시간), 대만(2,144 시간), 일본(1,706 시간)순으로 근로시간이 길었다.

이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13 년 기준 1 인당 GDP 가 각각 55,182 달러와 37,955 달러로 한국(25,975)을 앞서고 있지만 더 많이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대만은 구매력기준 소득(한국 33,791 달러 · 대만 41,539 달러)이 우리보다 높지만 근로시간은 비슷했다.

지난 30 년간 근로시간 감소추세 역시 우리나라가 아시아 경쟁국가보다 가팔랐다. 한국은 1980 년~2011 년 사이 근로시간이 연 평균 18.4%감소해 일본에 이어 가장 많이 줄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논의됐지만 우리나라와 경제발전 경험이나 문화가 비슷한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반드시 장시간근로 국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의 경쟁력

아시아생산성기구(APO)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근로자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싱가포르와 홍콩이 가장 우위에 있고, 이어 대만 · 일본 순이다. 반면 한국의 임금수준은 경쟁국가보다 높았다. 복수의 국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일본, 싱가포르보다 낮지만 홍콩, 대만보다 높아 중간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PPP)임금은 경쟁국 최고수준에 이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낮고 임금은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업은 고임금 부담에 생산량 차질까지 이중고를 겪을지도 모른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던 나라 중 싱가포르와 홍콩은 이미 1 인당 국민소득이 4~5 만 달러에 도달했는데 우리나라는 7 년째 2 만 달러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규제 강화가 아닌 생산성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의 노동규제 강화 추세는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4 월 국회의 정년 60 세 의무화 입법, 12 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이어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10 월초 발의된 비교적 온건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마저 노동계 등의 반대에 부딪쳐 있다. 이 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현행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6 단계로 나눠서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노동자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너무 자기주장만을 고집하여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제도를 정하고 그 이상의 수준은 각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제공 : 충주상공회의소

043-843-7001